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제안연월일: 2024. 12. .

번호 제 안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 명	의안번호	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
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	2202285	정부	'24.07.26	상정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'24.11.19)
			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소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2411.21.) 심사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2411.25.)
	2203769	김재원의원 등 11인	'24.09.06	상정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'24.11.19)
			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소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2411.21.) 심사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2411.25.)
	2204751	민형배의원 등 13인	'24.10.17	상정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'24.11.19)
			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소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2411.21.) 심사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2411.25.)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4. 11. 25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, 한옥체험업자, 관광펜션업자,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.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.

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 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 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·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.

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,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·양육·교육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현실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. 대부분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합니다. 호텔 등 숙박업소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탓입니다. 숙

박 및 관광시설 이용에도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 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상 속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입니다.

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의하고, 안전·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, 제20조의3 신설 등).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(안 제47조의3제3항 신설).
- 다.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함

(안 제64조, 제64조의2 및 제65조)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(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(도시지역에서 「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,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업
- 마. 한옥체험업: 한옥(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)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 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

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제2장제3절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안전 및 위생 교육)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 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47조의3의 제목 중 "고령자"를 "고령자·다자녀가구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4조(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)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6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65조제1항 중 "이용자 분담금·원인자 부담금 또는"을 "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"로 한다.

제8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3호라목·마목, 제20조의3 및 제8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부과된 이용자 분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제64조의2 및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 관광	제3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
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관광객 이용시설업 : 다음	3
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라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:
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	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
	<u>따른 도시지역(「농어촌정</u>
	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
	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
	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	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
	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
	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
	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
	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
	고 숙식 등을 제공(도시지
	역에서 「도시재생 활성화
	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<신 설>

4. ~ 7. (생 략)

② (생략)

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 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 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 면서, 외국인 관광객의 이 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 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 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 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 함한다)하는 업

마. 한옥체험업: 한옥(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)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47조의3(장애인·<u>고령자</u> 관광 활동의 지원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제64조(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)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 게 할 수 있다. 제20조의3(안전 및 위생 교육) 제 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 다.

제47조의3(장애인·<u>고령자·다자</u> <u>녀가구</u> 관광 활동의 지원) ① 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 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 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한다.

제64조(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)
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 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③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・ 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 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64조의2(분담금 부과 처분 등 <삭 제> 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사 업시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 른 분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

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

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제65조(강제징수) ① 제64조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 ·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 · 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

② (생 략)

할 수 있다.

제8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•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

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4. ~ 6. (생략)

③ (생 략)

저]65조(강제징수) ①
	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
	시설의
	,
	② (현행과 같음)
저]8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	②
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	3.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
	및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
	<u>자</u>
	4. ~ 6. (현행과 같음)
	③ (현행과 같음)